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1. 18 선고 2022가단162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11. 18.

주 문

- 가. 피고와 소외 C1)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2017. 10.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7. 11. 28. 접수 제68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가. 피고와 소외 D(주민등록번호 2 생략) 사이에 2017. 10. 1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등기와 2017. 11. 28. 접수 제6819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에 대한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판사 이장형

별지

1)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된 ‘E’은 ‘C’의 오키로 보여 주문에서는 이를 정정하였다.